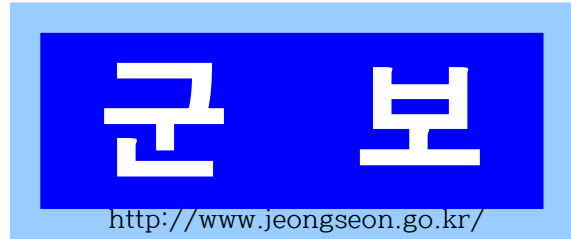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54호 2011. 11. 02. (수)

【규 칙】

- 정선군규칙 제1184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규칙 제1185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585호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7
- 정선군공고 제2011-588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11
- 정선군공고 제2011-589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규 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1. 2.

정선군 규칙 제1184호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본문중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중 “7인 이상 9인 이하”를 “9인 이상 12인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의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금고지정)① (생략) 1.~2. (생략) <u>3. 군이 강원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4. (생략) <u>5.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②~③ (생략)	제4조(금고지정)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3. <삭제></u> 4. (현행과 같음) <u>5. <삭제></u>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생략) ② (생략) 1. <u>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u> 에 의한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4.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u>7인 이상 9인 이하</u>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2. (생략) <u><신설></u>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u> ----- -- 2.~4. (현행과 같음) ③----- <u>9인 이상 12인 이내</u> ----- ----- ----- ----- 1.~2. (현행과 같음) <u>3. 지방의원</u>

개 정 이 유

- 금고 수의계약 관련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44호)」에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금고지정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각 호의 일부조항 삭제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일부수정(안 제6조제2항제1호)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 범위 확대(안 제6조제3항)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11. 2.

정선군 규칙 제1185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기타 전기, 소방, 통신은 8천만원)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지방 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 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 관 이 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 소, 의회사무과, 읍면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 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의 입찰(기타 전기, 소방, 통신은 8천만원)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개 정 이 유

- 계약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화가 필요함에 따라 현행 분산 처리되고 있는 체계를 통합관리 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제⑤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 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기타 전기, 소방, 통신은 8천만원)
 -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1-585호 (2011. 10. 25)

정선 해피아리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번지 일원
- 목 적 : 폐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신축한 아파트임
- 공급규모 : 5년 공공임대아파트 2개동 140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101동 : 84세대, 102동 : 56세대)

■ 공급대상

구 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 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 세대수								최 고 층 수
				공급 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계약면 적)	계	일반	특별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계					소 계	신혼부부 특 별 3%	다자녀 특 별 5%	근로자 생애최초 3%	노부모 특 별 5%	기타 특별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 54%	
계									140	42	98	4	7	4	7	76	
101동	2011000 1041(1)	47.1800A	47A	47.18	19.74	66.92	2.28	69.20	30	7	23	1	1	1	1	19	15
	2011000 1041(2)	58.2100	58	58.21	20.29	78.50	2.82	81.32	54	16	38	2	5	1	3	27	15
102동	2011000 1041(3)	47.1800B	47B	47.18	20.40	67.58	2.28	69.86	56	19	37	1	1	2	3	30	14

※ 대지면적 : 6,719.46㎡ (세대당 면적 : 101동 47A형 44.80㎡, 101동 58형 52.65㎡,
102동 47B 45.23㎡)

- ① 신청주택은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접수 합니다.
- ② 입주 예정시기는 2011년 12월 입니다.
- ③ 일반 공급 호수는 특별 공급 청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 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 됩니다.
- ④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
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공용 면적 입니다.
- 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

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⑥ 층수는 동별 최고층이 14층 및 15층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가스),구조는 벽식,지붕은 평지붕이며, 부대시설로는 경로당 (남,녀 구분), 관리사무실, 경비실이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동	층 별	임대 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원)	입주(예정)시기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47A (101동)	전 층	18,400	10,000	8,400	220,000	2011년 12월
58 (101동)	전 층	25,000	15,000	10,000	250,000	2011년 12월
47B (102동)	전 층	18,900	10,000	8,900	220,000	2011년 12월

※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 전환 가능하며, 보증금 납부는 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

① 임대기간 : 5년

101동 → 47A 30세대 . 58 : 54세대, 102동 → 47B 56세대는 5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② 임대차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 함

- ③ 월 임대료는 입주 기간중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정한 20분의1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음

- ④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정선군수”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원금만 반환함

- ⑤ 입주예정시기는 2011.12월로 예정되며,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⑥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는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합니다.

- ⑦ 월임대료는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에 따른 소정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 ⑧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 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 ⑨ 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 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 합니다.

- ⑩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고,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우선순위에 의거 공급합니다

■ 임대주택 분양 전환 기준

- ①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②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③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④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2011.10.25)

주택형	택지비	건축비	계
47A	27,334,000	69,269,200	96,603,200
58	32,121,400	78,953,588	111,074,988
47B	27,594,700	69,929,860	97,524,560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대상자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 25)”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로 청약이 가능함.

- 국민주택에 당첨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당첨자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당첨제한기간 경과 후 당해 청약통장 사용 가능)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국민주택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당첨자 중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과 함께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 동일한 청약통장 계좌로 다른 주택에 이중 당첨되어 한 세대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함.

정선군 공고 제2011-588호

도로명주소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3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31.

정 선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10. 31(월) ~ 2011. 11. 15(화)

2. 의견제출 방법

붙임조서의 도로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민원봉사과 ☎ 033)560-2183, fax 033)560-2407,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봉양리 267)정선군청 민원봉사과】

가. 예비 도로명 등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도로명의 변경 절차



4. 첨부

○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서 1부.

붙임. 정선군 도로명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조서

순번	위계	관할행정구역	변경전					
			현재 도로명	기점	종점	길이(m)	폭(m)	변경 희망 사유
1	길	여량면	여송정길	여량면 여량리 699-20 도	여량면 여량리 756-1 도	1,457.93	4	"여송정"이라는 이름은 해당마을과 관련성이 적고, "아우라지"라는 이름으로 지도 등 각종 자료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변경 희망

변경후						
예비 도로명	기점	종점	길이(m)	폭(m)	기초 간격	변경사유
1안) 아우라지 강변길	여량면 여량리 699-20 도	여량면 여량리 756-1 도	1,457.93	4	20m	도로명 변경신청
2안) 아우라지 본길						
3안) 원 아우라지길						

정선군 공고 제 2011-589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31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함(안 제2조)

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안 제3조)

다.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4조)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제5조)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 제6조)

바.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함(안 제7조)

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8조)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아.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안 제13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87)에게 제출하시고 기타 사항은 세무회계과(전화 560-2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선군 군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 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

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
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
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
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
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
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
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
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
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
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
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
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1. 함백 농공단지
2. 예미 농공단지
3. 증산 농공단지

제7조(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당해 공장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장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선군 군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7조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군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00조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인) ○○ 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연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부 기한
결장사유							

끝.

군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